

부산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326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1. 2. 23.

판결 선고 2021. 3.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20.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4. 22. 접수 제595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1) 원고는 2017. 4. 13.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68,850,000원, 보증기한 2018. 4. 12.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액은 64,60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한은 2021. 4. 9.까지로 연장되었다.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3) 소외 회사가 2020. 5.경 폐업하고 위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C은행은 2020. 5.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잔액 76,000,000원(보증잔액 64,6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 8. 12.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C은행에 65,240,704원을 변제하였다.
- 5)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전34911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6,816,064원 및 그 중 65,240,7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20. 1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회사는 2020. 4.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20. 4.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 4. 22. 접수 제59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시가 545,190,978원 상당의 이 사건선박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특별히 없었고, 한편 중소기업은행에 760,309,433원, C은 행에 205,000,000원 등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D기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고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년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하여 위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 주면 대출 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가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9. 4. 11. 150,000,000원, 2019. 4. 16. 100,000,000원, 2019. 7. 24.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9. 7. 31.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2020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9. 10. 21.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20. 3.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말소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20. 4. 2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2019. 10. 2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위하여 피고의 위 2019. 10. 21.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에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목 록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와 명칭: 동력선

선적항: 부산광역시

선질: 강

총톤수: 433.50톤

기관의 종류와 수: 디젤기관 1350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추진기 1개

진수 연월일: 1974년 8월

국적취득 연월일: 1989년 12월 22일

근저당권의 표시

위 선박에 대하여 2020년 4월 14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설정계약에 기한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 595호 등기한 근저당권.

— 이 상 —

